# 감사결과 처분요구처분취소 청구소송

| 소송종류 | 행정소송 | 법 원 명 | 대법원 |
|---|---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두○○○○○[3심] | 사건유형 | 인사처분 |
| 원 고 | ○○○ | 피 고 | 인천광역시교육감 |
| 판결선고일 | 2023. 8. 31. 심리불속행기각 | 비 고 | [1심] 2022.6.30. 원고일부승(교육감일부승)<br>[2심] 2023.4.18. 원고일부승(교육감일부승)<br>[3심] 2023.8.31. 심리불속행기각(교육감승) |
| 사건개요 | ❍ 원고는 부평구 소재 ○○유치원(사립)원의 원장으로, 2017. 3. 9.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임. 피고는 ○○유치원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, 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위반을 이유로 2021. 8. 25.자 '중징계(정직1월) 의결 및 부적정하게 사용한 유치원 교비 933,037,780원 시정(보전)조치 요구" 처분을 함.<br>❍ 원고는 유치원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명하였으나, 피고는 이중 일부만 인정하고, 933,037,780원은 인정하지 않았음. 원고는 2017. 3. 9.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을 시작하여 유치원의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 사재를 투입하여 유치원을 위하여 사용(직원 인건비, 교재.교구비, 유치원 시설을 위한 비용, 아이들의 체험장 사용료 등) 한 바, 모두 교육목적인 점은 참작되어야 하며, 원고가 운영하기 전에 발생한 금액 446,132,297원에 대해서 원고에게 보전조치를 내리는 것은 원고의 책임이라 할 수 없음. 원고가 실제 유치원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원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바, 이는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소를 제기함. | | |
| 주 문 | 상고를 기각한다.<br>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| | |
| 이 유 | ❍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| | |
| 2심 판결요약 | ❍ 유치원의 교비가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, 그 지도.감독기관은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.경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, 원고가 2017. 2. 9. 이○○로부터 | | |

| | |
|---|---|
| | 이 사건 유치원을 매수하면서 446,132,297원을 유치원 교비에서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를 처분 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.<br>❍ 원고의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피고의 보완요구가 있었고, 이후 2020. 9. 2.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았으며, 이 시기에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, 공사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이상,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여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. 따라서, 이 사건 시정요구 대상 금액 933,037,780원 중 329,900,000원은 이미 보전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시정요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.<br>❍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때는 ① 구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 제2호 및 제25조에 따라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및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점, ② 징계요구자가 기재한 징계의 종류와 양이나 징계요구자의 의견서는 '징계요구의 내용'으로서 고려사항에 불과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그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,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할 때 징계의 종류와 양을 특정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. |